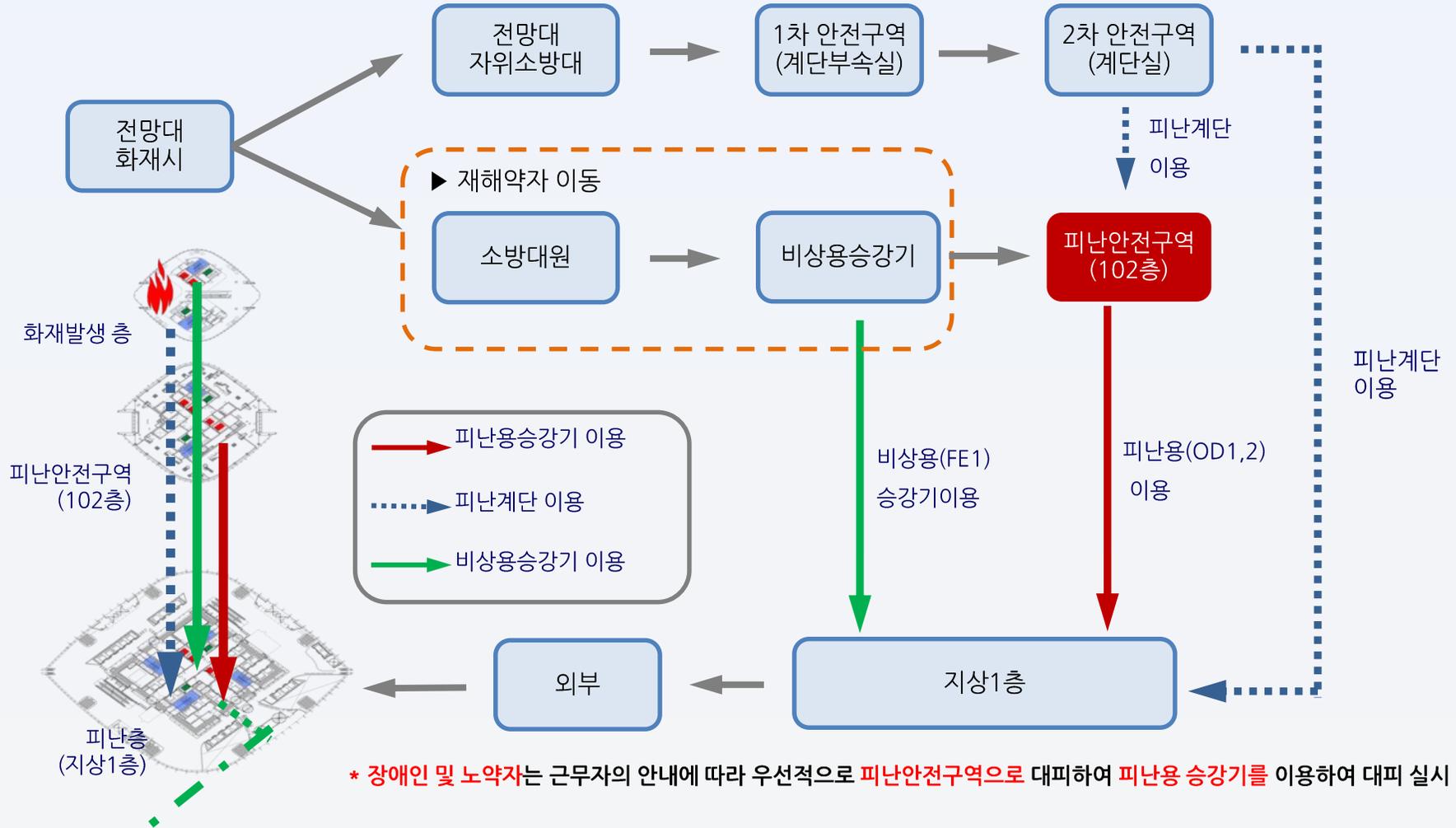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자위소방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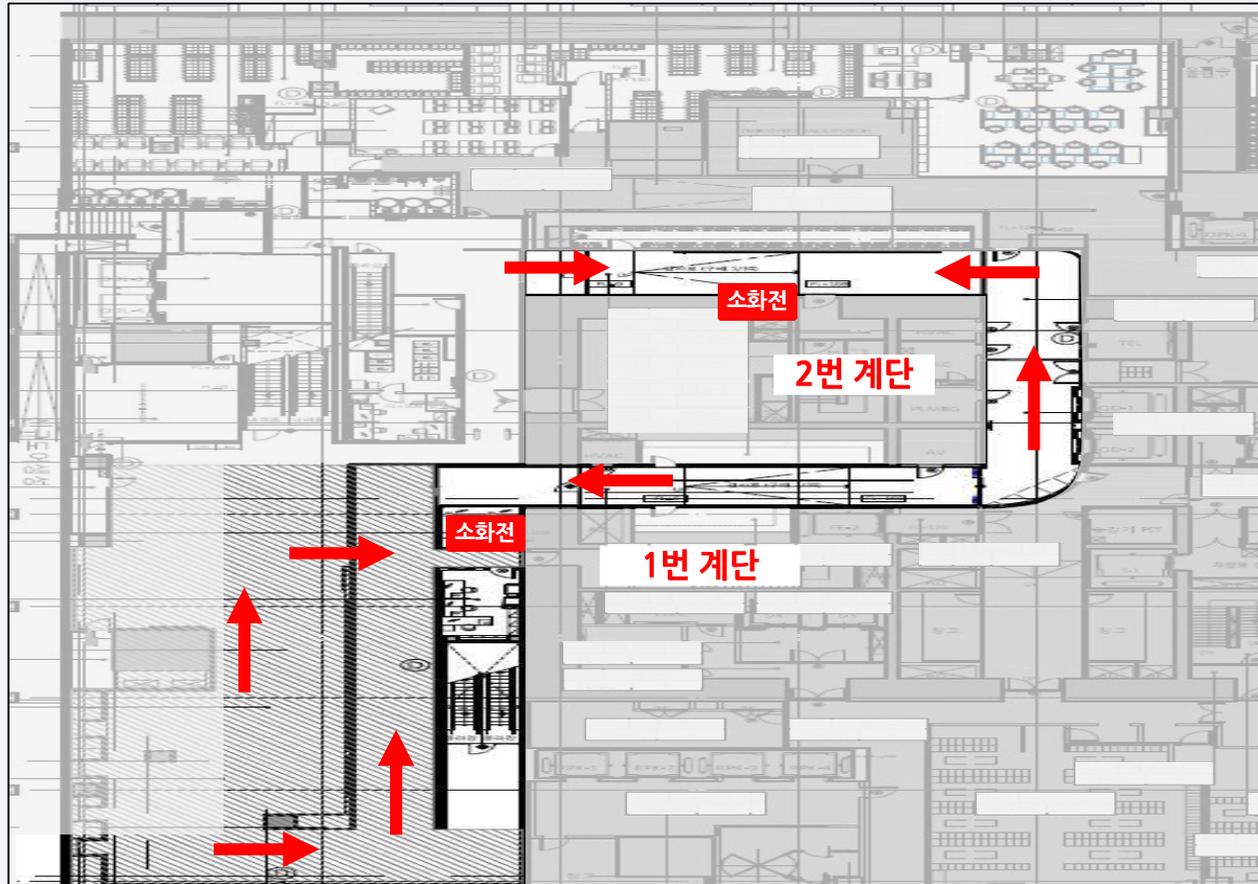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피난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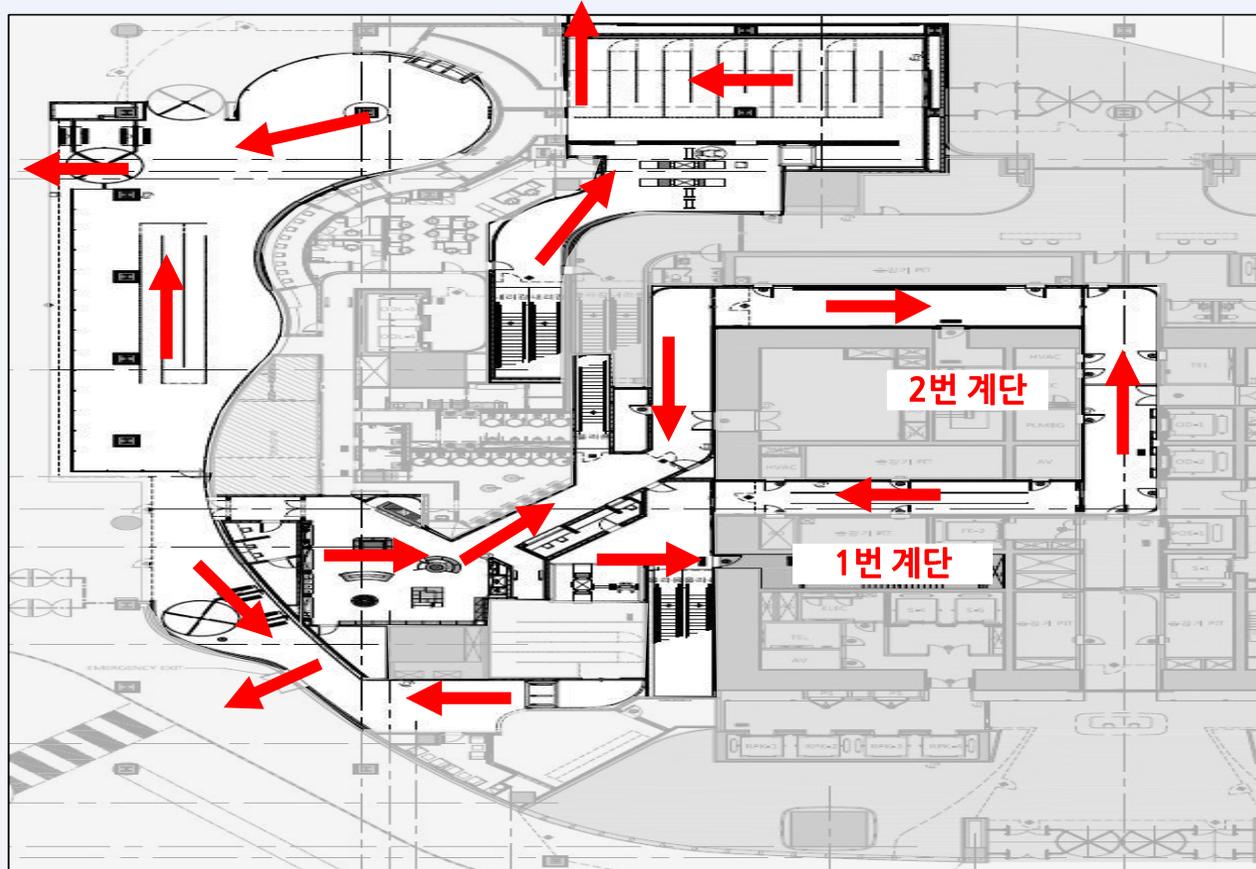
## ▣ 서울스카이 피난 동선 계획



# [서울스카이] B2F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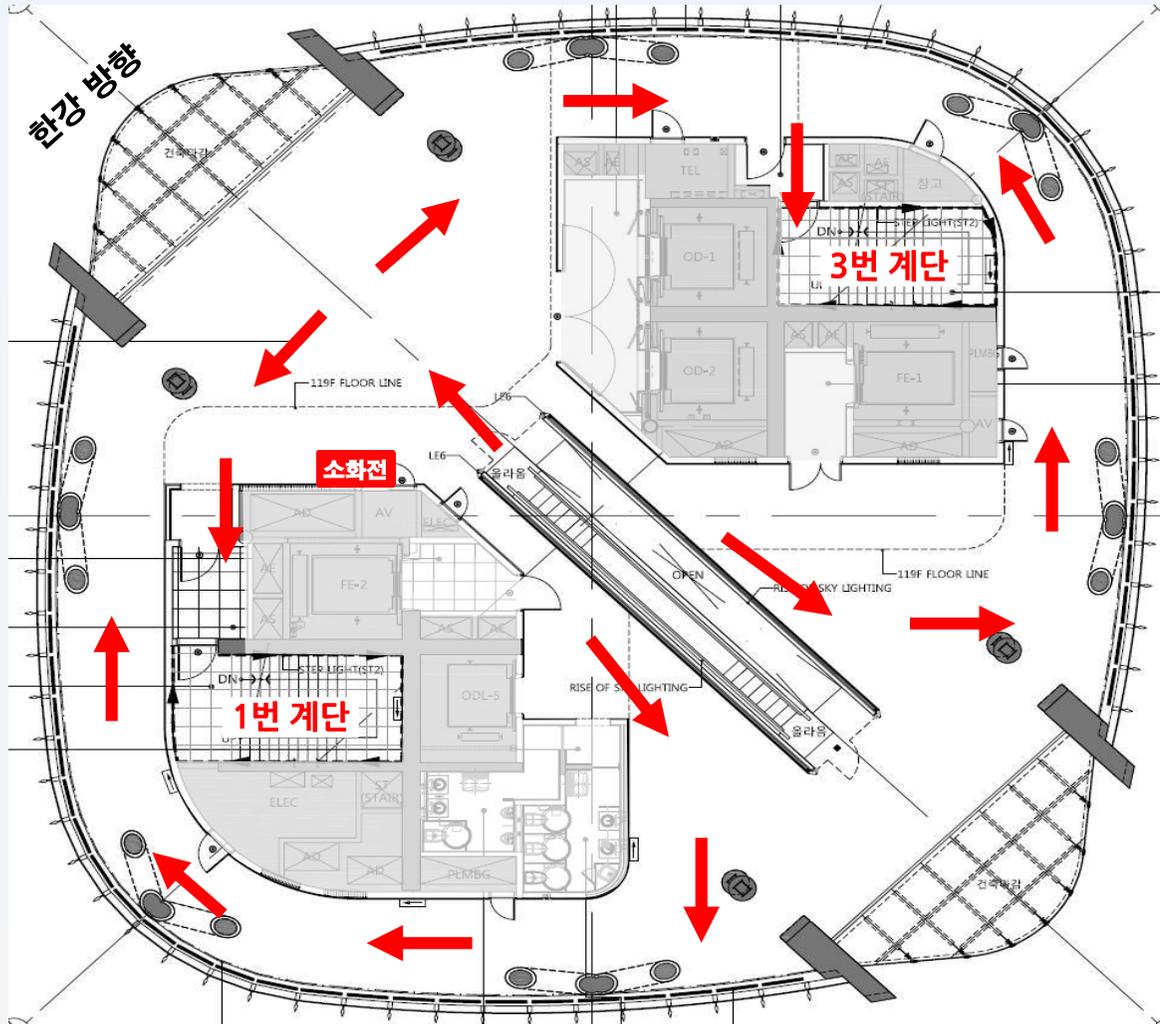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B1F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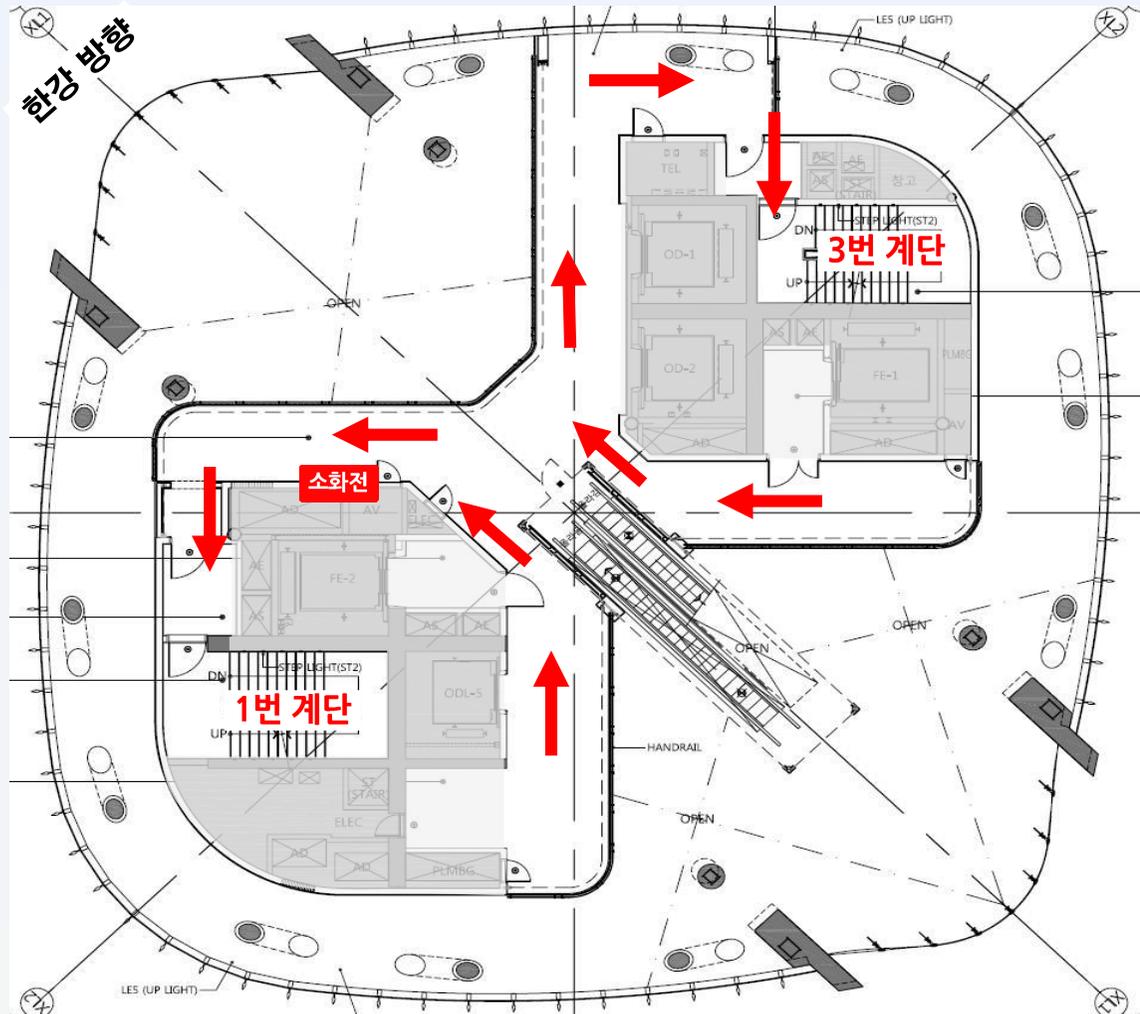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118F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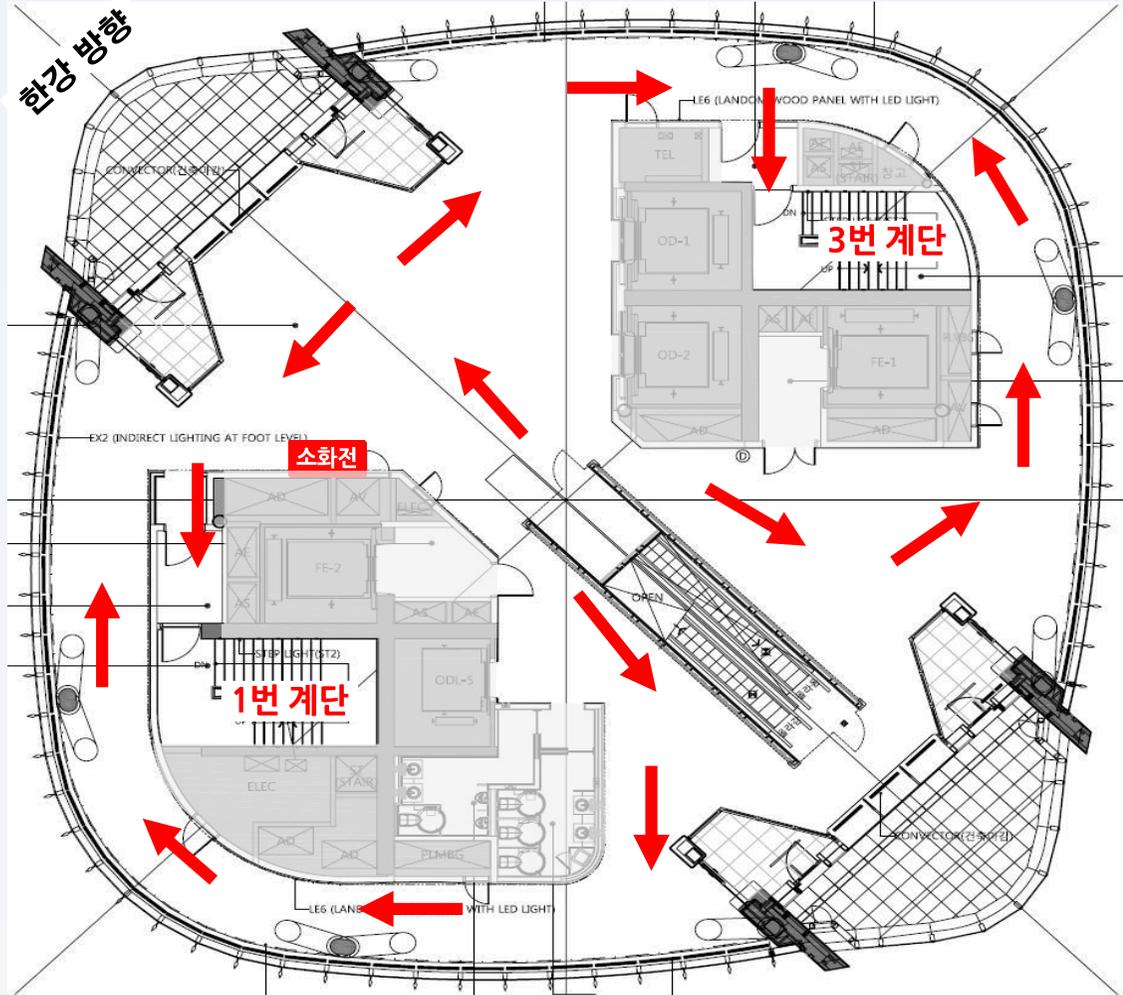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119F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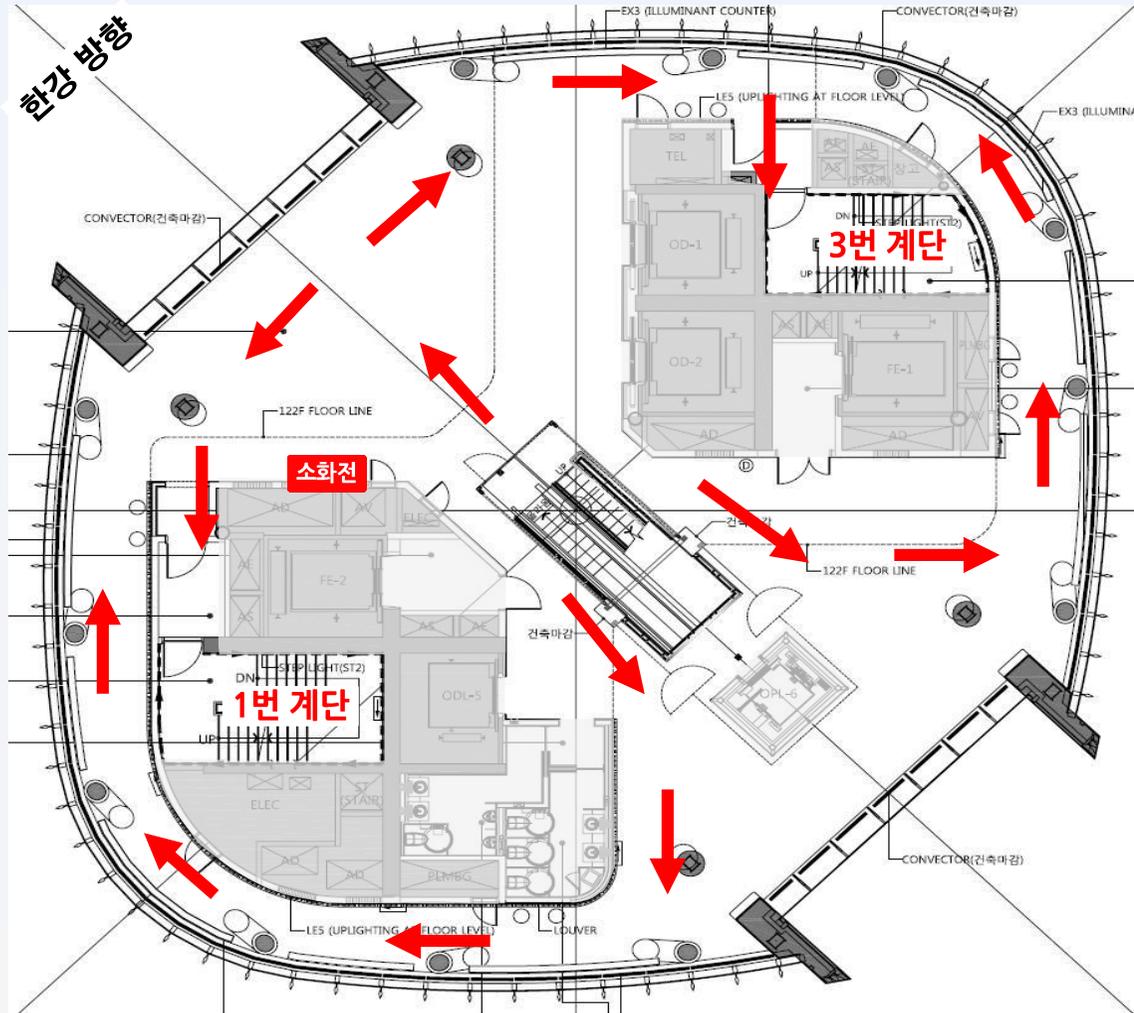


↑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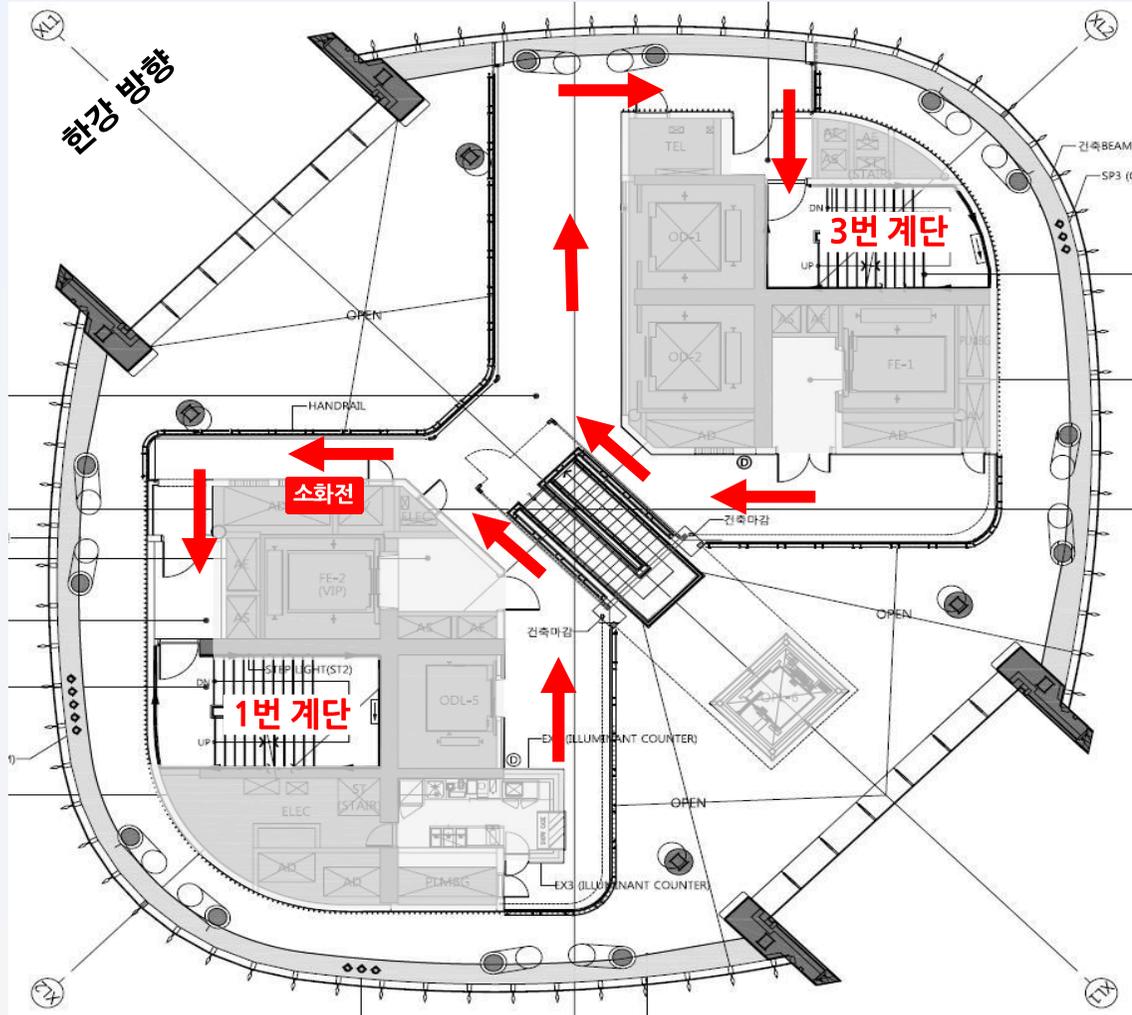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120F 피난동선



# [서울스카이] 121F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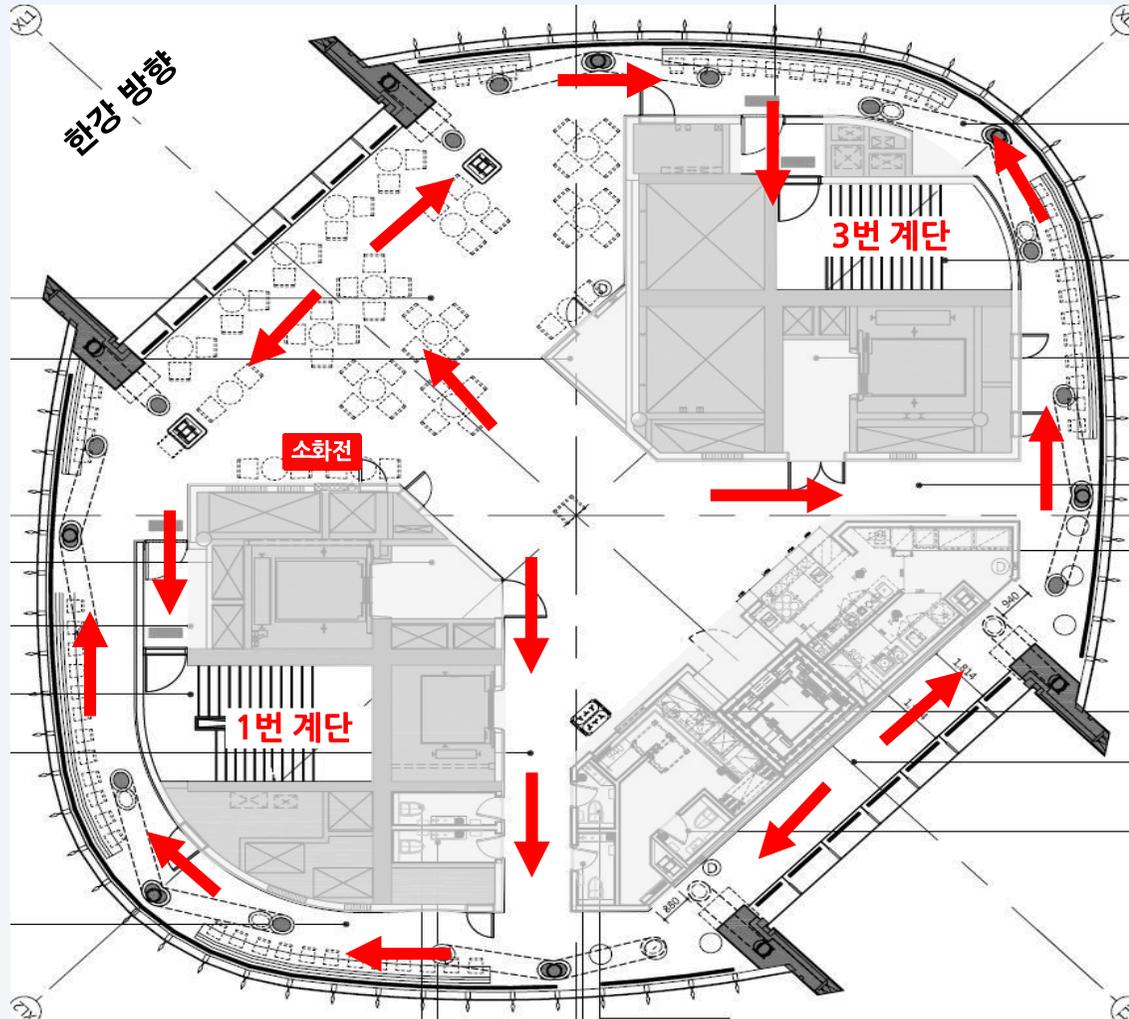


# [서울스카이] 122F 피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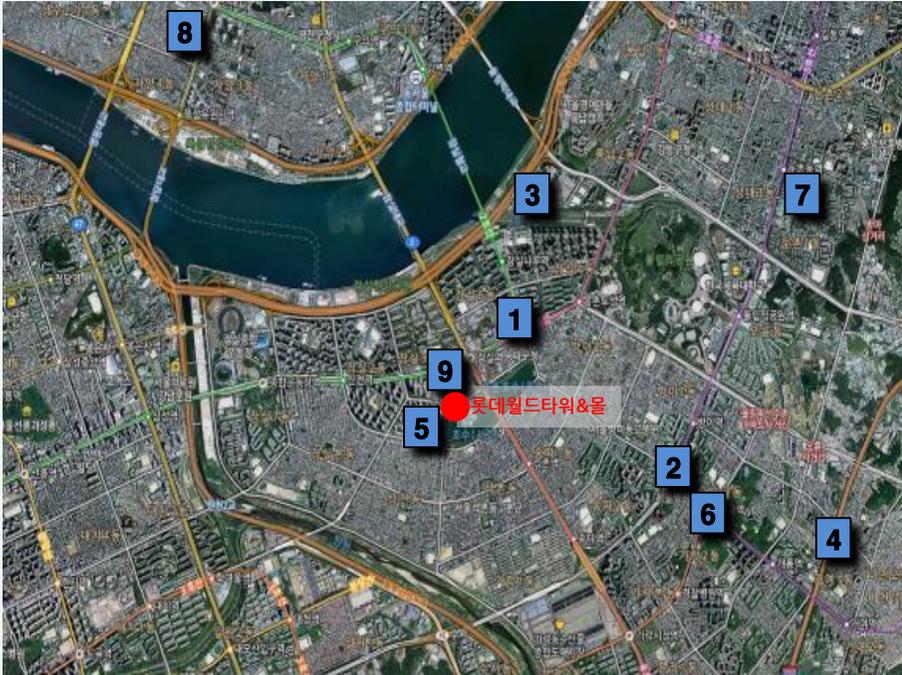


↑ 피난동선

# [서울스카이] 123F 피난동선



# [서울스카이] 주변 관공서 연락망



NO	주변 관공서	☎
1	송파구청	02) 410-3300
2	서울병원	02) 405-8500
3	아산병원	1688-7575
4	송파소방서	02) 403-2119
5	송파소방서잠실119안전센터	02) 422-0119
6	송파 경찰서	02) 402-0112
7	한국전력공사(강동지사)	123
8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9	롯데월드	02) 411-2119

# [서울스카이] '23년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8쪽 중 제1쪽)

작동점검,  종합점검 ( 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특정소방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점검기간	2023년 04월 10일 ~ 2023년 06월 28일 ( 총 점검일수 : 53일 )				
점검자	[ ] 관계인 (성명: , 전화번호: )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 전화번호: )				
	[√] 소방시설관리업자 ( 업체명 : 프라이밍방재, 전화번호 : 1544-5469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관계인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점검인력	구분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점검참여일(기간)
	주원 기술인력	박	소방시설관리사		2023.04.10
	보조 기술인력	송	소방기술인정자격		~
	보조 기술인력	김	소방기술인정자격		2023.06.28. (53일간)
	보조 기술인력	전	소방설비기사		2023.04.13~04.14 (2일간)
	보조 기술인력	하	소방설비기사		2023.04.10~04.12 04.17~05.16 05.19~06.28 (49일간)
	보조 기술인력	이	소방설비기사		2023.04.10.~05.04 2023.05.17.~05.18 (19일간)
	보조 기술인력	나	소방기술인정자격		2023.04.10.~06.02 06.07~06.28 (52일간)
	보조 기술인력	나	점검자격력수첩		2023.05.08.~06.28 (36일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권득익** (서명 또는 인)

송파 소방서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출	소방청징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
관계인이 제출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8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